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2제2호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곡물 도정업	10611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떡류 제조업	1071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빵류 제조업	10712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13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 조업	10730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류 제조업	10743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커피 가공업	10791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차류 가공업	10792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삼제품 제조업	10795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